

『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 폐지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폐지이유

- 이 조례는 구미시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하여 제정(2000.12.15)되었으나,
-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인 「전통사찰보전법」 제6조의2 조항이 개정되어 법령상 근거 없는 임의규정이므로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」 폐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전통사찰보존법」 제6조의2
 - 「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기 타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폐지조례안은

관내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하여 2000. 12. 15. 제정되었으나 근거 법령인 「전통사찰보존법」 제6조의2 조항이 개정되어 법령상 근거 없는 임의규정이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

○ 주요 내용은

- 「구미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」를 폐지하는 것임

○ 검토결과

- 본 폐지조례안은

관내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하여 2000. 12. 15. 제정되었으나 근거 법령인 「전통사찰보존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가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